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3나46373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3나4637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2가소213343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윤덕주

변론종결 2024. 3. 21.

판결선고 2024. 4. 25.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2가소2133439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07,08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1. 12. 13.경 피상속인 C의 보증채무 내역을 피고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고, 피고는 상속채무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생채권 목록에 악의적으로 누락하고 기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경우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이 사건 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

나. 판단

을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측으로부터 2022. 2. 25.자로 개인채무자회생신청용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이에 기재된 2건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자목록을 제출한 사실 및 원고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 및 채권신고안내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생채권 목록에 악의적으로 누락하고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관리인의 악의적인 회생채권 목록 누락의 경우 그 회생채권이 실권되지 않는다고 보는 취지는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서도 이 사건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적용할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형작, 판사 김연화, 판사 해덕진